

징 계 양 정 기 준
(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 관련)

(제43조 관련)

비위의 유형	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		100만원 미만	100만원 이상
	수동	능동		
1. 위법·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	강등-감봉	해고-정직	해고-정직	해고-정직
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해고-정직	해고-정직	해고	해고
3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해고-정직	해고	해고	해고